

평생
건강
2173이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제도

h·well
국민건강보험



천안지사

[안내문]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대한민국에서 6개월이상 체류하게 되면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에 당연가입 됩니다

□ 시 행 일: 2019. 7. 16. ~

□ 주요내용

○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 당연가입

✓ 유학(D2) 또는 결혼이민(F6)의 경우는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한 날 가입

❖ 가입제외 신청대상 : 외국의 법령·보험 및 사용자의 계약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자격은 등록된 체류지(거소지)에 따라 개인별로 관리(취득)되며, 건
강보험료도 개인별로 부과

✓ 다만, 같은 체류지(거소지)에 배우자 및 만19세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여 가족단위로 보험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 필요

✓ 보험료는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하며,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 평균보험료를 부과

※ 2020년 보험료(월): 123,080원 이상

❖ 가족관계 확인용 서류

- 해당국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사실이 나타나는
서류 ... 한글번역 포함

○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 보험료 납부

○ 보험료 미납하면 불이익 발생

✓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

✓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제한(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소득, 재산, 예
금 등 압류하여 강제 징수

○ 건강보험 혜택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

✓ 입원, 외래진료, 중증질환, 건강검진 등

If any foreigner or overseas Korean has stayed
in the Republic of Korea for more than six months,
he or she will be mandatorily subscribed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from July 16, 2019.

☐ **Enforcement date:** July 16, 2019

☐ **Main details**

- If you have been residing in Korea for more than six months, you will be mandatorily subscribed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of Korea.
 - ✓ If holders of Study(D2) or Marriage (F-6) Visa, from the very date of entry into the country (alien registration date)
 - ❖ **Those exempted from the subscription:** If an individual can get a medical guarantee commensurate to the medical care expens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1 of the law in line with foreign laws, insurance, and user contracts
- You will be enrolled individually according to the residential address in Korea, and thus the insurance contribution will be imposed individually.
 - ✓ However, if you wish to pay the insurance contribution in combined subscription of several people as one household, because your children younger than 19 years or spouse is residing in the same place as you, the subscriber, you have to bring documents confirming your family relations, visi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office, and make a request.
 - ✓ The insurance contribution is calculated according to income and property. If the calculated contribution is below the average insurance contribution of all subscribers in November of the previous year, the average contribution is imposed.
 - ※ Monthly contribution in 2020 : KRW 123,080 or more
 - ❖ **Documents to submit to confirm family relations**
 - Documents showing family relations or marriage certified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levant country (or Apostille) including the Korean translation version
- The insurance contribution for the following month is to be paid by the 25th of each month.
- In case of delaying payment of the insurance contribution, you will incur the following disadvantages:
 - ✓ Limited health insurance benefits when using hospitals or clinics
 - ✓ Limited residence permit when requesting for a visa extension and all other kinds of residence permits (Korea Immigration Service of the Korean Ministry of Justice or any public immigration office of the Republic of Korea)
 - ✓ If you do not pay even when pressed after a set period, your income, property, and savings will be seized and collected by force.
- Health insurance benefits are the same as those of the citizens of Korea.
 - ✓ Hospitalization, outpatient medical treatment, care for severe conditions, health check-up, etc.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안내

□ 가입대상 및 절차

○ (가입대상) 6개월 이상 대한민국 체류자 중 건강보험에 미가입한 외국인·재외국민은 지역가입자 당연적용, 다만 결혼이민(F-6)은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가입

-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체류자격은 A(외교), B(관광), C(단기), G1(기타). 다만 G1(기타) 중 인도적체류허가자(G-1-6) 및 그 가족(G-1-12)은 가입대상
- ☞ 유학생 체류자격인 D2, D4의 경우 당연적용 한시적 유예('21.2.28. 까지)

○ (가입절차)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공단에서 일괄 직권 취득처리

- 보험증·안내문, 고지서 등 미수령시 공단에 가입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

◆ 가입제외 신청대상: 외국의 법령·보험 및 사용자의 계약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보험료 부과 및 납부방법

○ (보험료 부과) 보험료는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하고, 산정된 보험료가 전체가 입자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보험료('20년도 123,080원) 부과

- 다만, 난민인정자(F-2-4) 및 그 가족(F-1-16), 19세미만 단독세대는 평균보험료 미만의 경우에도 평균보험료를 적용하지 않고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험료 산정

◆ 세대(가족)단위 보험료납부 신청방법: 같은 체류지에 배우자, 19세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문서발행국(본국) 외교부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 확인서류(한글번역 포함)를 제출하는 등 세대합가 신청을 하여야 함

○ (보험료 납부방법) 다음달 보험료를 직전월 25일까지 자동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공단지사), 징수포털 등

☞ 자동이체 신청방법 : 공단 지사 방문(유선) 또는 고객센터(1577-1000) 신청

※ 체류자격이 F-5(영주), F-6(결혼이민)는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적용.

□ 보험료 체납

- (보험급여제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다음달 1일부터 병원·의원 이용시 전액 본인 부담
- (비자연장 등 제한) 보험료 50만원 이상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법무부에 체류기간 연장·변경 등 각종 신고시 심사에 활용 ... 19세 이상만 해당

□ 보험급여 및 건강검진 등 혜택

- (보험급여)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함
- (건강검진) 일반검진은 2년 주기로 출생년도에 따라 실시

< 다빈도 FAQ >

Q1. 건강보험 가입 시기가 경과하였는데, 공단으로부터 안내문 등 통지서가 없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건강보험증·고지서 등을 수령하지 못했다면, ①자료 오류 등으로 자격취득에서 누락, 또는 ②법무부에 신고한 체류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①의 경우는 공단에 확인하여 자격취득신고하고 ②의 경우는 관할기관에 체류지 변경 신고(공단에 별도신고 불필요)를 하여야 합니다.
- ☞ 자격취득이 누락된 경우에도 향후, 누락시점부터 소급하여 보험료 납부하여야 함

Q2. E-9 체류자격으로 현재 구직활동 중인데, 수입이 전혀 없다. 그래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

- 건강보험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방식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급여 제한, 비자연장 등 각종체류허가 제한, 연체금 부과, 강제징수(예금 등)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가입 주요내용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③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것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등)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하고, ...

☐ 시행일 : 2019. 7. 16.

☐ 가입대상

○ 6개월 이상 체류자 중 건강보험 무자격자

- 유학(D-2), 결혼이민(F-6), 고등학교 이하 유학생(D-4-3)은 6개월 체류 기간 관계없이 가입

☞ 유학생 체류자격인 D2, D4의 경우 당연적용 한시적 유예('21.2.28.까지)

☐ 가입절차

○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공단에서 개인별 가입처리

☞ 안내문, 건강보험증, 고지서 등 미수령 시 방문(유선) 신고

❖ 외국인 한글 또는 영문성명 선택 사용

- (기준) 건강보험 자격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한글성명,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무부 외국인등록정보의 영문성명으로 자격취득
- ※ 본인 신청 시 한글·영문성명 상호 기재변경 가능
- (직장가입자 성명) 타 공단에서 영문성명 사용 불수용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는 한글성명만 가능

☐ 자격취득시기

○ 국내 입국하여 6개월 경과하는 날

- 유학 또는 결혼이민은 입국일
(입국일보다 외국인등록일이 늦은 경우 외국인등록일)

☐ 보험료 부과

- 보험료는 소득·재산 등에 따라 세대단위로 보험료를 산정하나, 그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 보험료를 1월부터 12월분 보험료까지 부과

* 123,080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세대(가족) 단위로 보험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

❖ 세대합가 기준 : 체류지(거소지)가 동일한 배우자 및 만19세미만 자녀

☐ 보험료 납부

- (납부기한) 매월 25일까지 다음달 보험료 납부

- (납부방법) 자동이체, 가상계좌, 금융기관 및 전자수납, 지사창구(카드), 징수포털 수납 등

-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보험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전월 보험료가 정상 출금되는 경우 당월 보험료 200원 감액 혜택도 제공

※ 영주(F-5), 결혼이민(F-6): 보험료 부과, 납부기한 등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

□ 보험료 체납

○ (보험급여제한) 병·의원 이용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

-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체납일로부터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

※ 9월에 10월분 보험료를 선납고지하고 9.25.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9.26.부터 급여제한하나, 보험료 납부 반영 시차 등으로 실제 사전급여제한은 다소 늦어짐

○ (비자연장 등 제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자연장 등 신청시 체류허가* 제한

- 체납금액: 보험료는 50만원 이상, 기타징수금은 10만원 이상

* 출국기간 연장,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근무처변경·추가 허가(신고)

※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6개월내에 체류기간 연장하고 최대 3회까지 허용 예정

○ (체납처분)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소득, 재산, 예금 등 압류하여 강제 징수

□ 서류제출기준 ... 세대합가, 피부양자 신청하는 경우

구 분	내 용
구비서류	•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인증기준	• 해당 서류에 외교부 인증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필요
번역	• 국내 번역 -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번역본 - 외국어번역행정사의 확인증명을 받은 번역본 • 국외 번역 - 해당 서류를 발급한 국가에서 번역공증한 경우, 원본 서류와 번역본 각각 외교부(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유효기간	• 국내 서류: 발급일로부터 3개월 • 국적국 서류: 발급일 또는 외교부(아포스티유) 확인일로부터 9개월

□ (가입제외 및 재가입) 당연가입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가입제외 및 가입제외자의 재가입(지역, 직장) 규정 마련

○ (가입제외) 지역가입자는 외국의 법령·보험 및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가입제외 가능

- 원칙적으로 가입제외 신청일에 자격 상실하나, 가입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자격취득일부터 소급하여 자격 상실

※ 소급상실은 최대 6개월까지 인정

- 외국의 보험은 국내에 장기체류(외국인등록, 국내거소신고 등) 이전에 가입한 경우만 인정

- 가입제외 기간은 1년 이내(외국의 법령은 해당 없음)

※ 시행일 이전에 가입제외한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 가입제외기간 유예

○ (재가입) 외국의 법령으로 가입 제외한 경우 신청일로 건강보험 재가입이 가능하며, 다만 재가입한 경우는 동일한 사유로 가입제외 불가

- 외국의 보험 및 사용자와의 계약은 가입제외기간 만료일 이전에 재연장 사전안내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입제외기간 종료일 다음날 지역 건강보험으로 직권 자격취득처리

□ (입국일 재가입 특례규정 보완) 국외체류기간 6개월 미만으로 체류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입국일로 가입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출국기간 중 체류자격 종료되지 않아야 하며, 보험료는 출국기간 동안 단독세대 납부로 특례규정 보완

□ (미성년자 보험료 납부의무 면제)

○ 선납외국인 미성년자는 납부의무 면제 제외

주요질의응답

☐ 자격취득

1

한국에 '20.2.5.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3.15.~3.30.(15일), 7.5.~ 7.15. 10일) 동안 출국하였는데 건강보험에 언제 가입할 수 있는지 ?

- 최초입국일('20.2.5.)부터 6개월간 출국기간의 합이 30일 이하인 경우 국내 체류한 것으로 간주
 - 최초입국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8.5. 건강보험 당연가입

2

한국에 20.2.5.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10.~2.25.(15일), 5.10.~5.20. (10일), 7.5.~7.15.(10 일) 동안 출국하였는데 건강보험에 언제 가입할 수 있는지 ?

- 최초입국일('20.2.5.)부터 6개월간 출국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 최초입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다시 6개월 계산
 - '20.3.1.부터 6개월을 계산하는 경우 출국기간이 통산 20일이므로, 6개월이 경과하는 '20.9.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

3

한국에 '20.2.5.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6.5.~7. 20. 동안 출국한 경우 건강보험에 언제 가입할 수 있는지 ?

- 1회 출국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따라서, '20.7.20.부터 6개월 경과한 '21.1.20. 건강보험 당연가입

4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데, 건강보험 가입절차는?

- 법무부에서 제공받은 외국인등록자료를 활용하여 공단에서 건강보험 가입처리하나,
 - 자료 오류 등으로 자격취득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증·고지서 등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반드시 공단 관할지사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가입여부 확인해야 함
 - 향후 가입처리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자격누락일로 소급 자격취득하고 보험료도 소급하여 납부해야 함

5

‘18.2.10.에 입국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했다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18.11.1. 지역자격이 상실되었다. ‘19.7.16.부터 건강보험 당연가입된다고 하는데,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해야 하는지 ?

- 당연가입 제도 시행일(‘19.7.16.) 이전에는 건강보험 임의가입으로, 본인이 가입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보험료 납부의무 없음
 - 자격취득일은 당연가입에 따라 ‘19.7.16.이며, 자격취득일이 매월 1일 이외인 경우에는 해당월 보험료가 부과·징수에서 제외되므로 ‘19.8월분부터 보험료를 납부하면 됨

6

유학생이 민간보험사의 유학생보험에 가입한 경우 건강보험 가입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지 ?

- 외국의 법령·보험 및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가입제외가 가능함
 - 유학생 보험이 국내보험 또는 외국계 회사가 국내에서 출시한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외국의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 불가함

- ❖ 건강보험 가입제외 제출서류: 보험계약서, 근로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가입제외 신청서 1부

6

건강보험 가입시기가 경과하였는데, 공단으로부터 안내문 등 통지서가 없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건강보험증·고지서 등을 수령하지 못했다면, ① 자료 오류 등으로 자격취득에서 누락, 또는 ② 법무부에 신고한 체류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①의 경우는 공단에 확인하여 자격취득신고하고 ②의 경우는 관할기관에 체류지 변경신고(공단에 별도신고 불필요)를 하여야 합니다.

☞ 자격취득이 누락된 경우에도 향후, 누락시점부터 소급하여 보험료 납부하여야 함

☐ 보험료

7

1년 전 배우자, 자녀(만13세)와 동반 입국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한국에 계속 거주하였다.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으로 가족 모두에게 각각 보험료 고지서가 나왔는데,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지 ?

- 대한민국 국민과 달리,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별 체류지(거소지)로 관리하여 가족구성원 확인이 어려우므로, 건강보험은 개인으로 가입자 관리함
- 따라서 가족 단위로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 인정받아야 함

❖ 가족단위 및 서류제출 기준

- (가족 인정범위) 체류지(거소지)가 동일한 본인, 배우자 및 만19세 미만 자녀
- (서류제출) 해당국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 사실이 나타나는 서류

☞ 한글번역본 포함(본국에서 번역공증한 경우 해당서류와 공증서류 각각 외교부 확인)

8

한국인 남편이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인 배우자의 부모를 세대원으로 세대합가 가능한지 ?

○ 내국인 세대주에 외국인이 세대원으로 편입하는 경우는 가능함

❖ 지역가입자 세대합가 기준

내국인 세대에 편입하는 세대	외국인 및 재외국민으로만 구성된 세대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외손포함), 미혼인 형제 자매, 세대구성원(세대주 포함)의 배우자,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자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만 19세 미만) * 배우자의 자녀 포함

9

3개월 정도 출국 예정인데 자동이체로 건강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

○ 외국인은 보험료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초과하여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의 다음날로 자격이 상실됨

- 다만, 지역가입자 이력이 있는 사람이 출국 후 6개월 내에 재입국하여(출국기간 중 체류자격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국외 체류기간의 보험료를 1인 세대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입국일로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함

10

보험료가 123,080원이 나왔다. 보험료가 너무 많은데 조정은 가능한지 ?

○ 외국인은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고, 그 산정된 보험료가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 평균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의 보험료 경감 대상을 제외하고 보험료 조정이 불가능함

※ 2020년도 보험료(월) : 123,080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보험료 경감 대상

- 유학 · 일반연수(D-4) : 50%
- 난민인정자(F-2-4) · 인도적체류허가자(G-1-6) 및 그 가족(G-1-12) · 종교(D-6) : 30%

☞ 외국인은 소득·재산 파악이 곤란하므로 내국인과 달리 새로운 보험료 부과 기준 적용

11 '20.2.15. 입국해서'20.9.17. 현재 한국에 체류중인데, 이번'20.9월 에 246,160원을 납부고지서를 받았다.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은지 ?

- '19.7.16.부터 건강보험이 임의가입에서 당연적용으로 제도변경에 따라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한 날인 '20.8.15.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었음.
- 자격취득일이 매월 1일 이외인 경우에는 해당월 보험료가 부과 면제됨으로 '20.9월분 보험료부터 납부의무가 있으며, 이번에 246,160원 납부 고지한 사유는 외국인 보험료는 선납으로 2개월(9월, 10월)분 보험료를 한 번에 고지하였기 때문임

12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려고 하는데 신청 방법은 ?

- 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하며 자동이체를 원하는 경우 지사방문(유선)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카드결제 시스템 운영경비에 해당하는 수수료(신용카드는 납부금액의 0.8%, 체크카드는 납부금액의 0.5%)를 납부자가 부담해야 함

12 재외국민(유학), 재외동포(유학)의 경우는 당연가입과 보험료 경감은 어떻게 되나요 ?

- 지역가입에서 한시적으로 유예되는 체류자격은 유학(D2)과 일반 연수(D4)에 한정됨
- 따라서, 재외국민(유학)과 재외동포(유학)은 당연가입이 적용되며 보험료도 종전과 같이 재학중임을 소명하는 경우 50%경감됩니다.
- ※ 유학의 경우(C-9,C-10)는 6개월이상 체류해야 당연가입되는 것은 동일

12

E-9 체류자격으로 현재 구직활동 중인데, 수입이 전혀 없다. 그래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

- 건강보험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방식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급여 제한, 비자연장 등 각종체류허가 제한, 연체금 부과, 강제징수(예금 등)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체납 관리

13

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나중에 보험료를 완납하면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 환급이 가능한지 ?

- 외국인 등은 보험료 선납대상자로 해당월 보험료를 그 직전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가 제한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진료가 종료된 이후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더라도 전체 진료비중 공단부담금은 환급받을 수 없음

비자연장 신청을 위해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였다. 체납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비자연장이 제한된다고 하는데 ?

- 외국인의 체류질서 확립 및 효율적 징수관리를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외국인이 법무부에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보험료 체납정보를 체류심사에 반영하고 있음
- 따라서 공단(☎1577-1000)에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체납보험료를 납부 또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여 납부안내문을 발급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해야 정상적인 비자연장 가능

※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6개월 이내 비자연장 가능